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87
------	------

발의일자 : 2024. 8. 22.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정순기 의원

## 1. 제안이유

항암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가발구입비 지원(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4조 및 제5조)
- 지원신청 및 지원제한(안 제6조 및 제7조)
- 환수조치 및 시행규칙(안 제8조 및 제9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2)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3)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2024. 8. 23. ~ 2024. 8. 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 증세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성인 암환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인 1회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시 신청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병 명		상병코드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인 (대리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관 계	
신청내용	총구입비		본인부담금	
				신청금액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환수조치 시 안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예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_\_\_\_\_보건의료장 귀하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 4. 6.>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중 암환자. 다만, 의료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18세가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4. 삭제 <2021. 4. 6.>

② 삭제 <2016. 7. 26.>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의 대리 신청에 필요한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동의 서면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받아야 한다. <신설 2021. 4. 6., 2024. 7. 30.>

⑤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4. 6.>

##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1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제2조 관련)

2. 성인 암환자

가.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나.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기준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